「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Ⅰ 공급내역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48번지 외 4필지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최고 29층(2개동), 총 26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본 건축물은 주상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 입주예정시기 : 2030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기계실, 주차장등)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84.3746A	84A	84.3746	36.7886	121.1632	60.0859	181.2491	102
84.9824B	84B	84.9824	37.3866	122.3690	60.5187	182.8878	26
105.9633A	105A	105.9633	45.3722	151.3355	75.4599	226.7954	79
105.6430B	105B	105.6430	44.9776	150.6206	75.2318	225.8524	27
105.5065C	105C	105.5065	46.0517	151.5582	75.1346	226.6928	27
계							261

※ 상기 내역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주택형 및 약식표기는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제 청약 시 주택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 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84A		84B		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등		3	(15)	1	(5)	4	(20)
장기복무 제대군인		1	(5)	-	-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5)	1	(5)	2	(10)
장애인	경상남도	2	(10)	1	(5)	3	(15)
중소기업근로자		2	(10)	-	-	2	(10)
계		9	(45)	3	(15)	12	(60)

■ 특별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2026년 03월 27일 (금)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당사 홈페이지(www.힐스테이트평거.kr)
견본주택 개관	2026년 03월 27일 (금) 예정	• 힐스테이트 평거 센트럴 견본주택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924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6년 04월 06일 (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2026년 04월 14일 (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 ⑦카카오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필요서류는 홈페이지 서류안내 참조)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통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분
추천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 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된 분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 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td></tr>
<tr><td>청약 자격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td></tr>
</table>

청약 자격 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진주시 및 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Ⅲ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와 무관하오니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동호수추첨, 예비입주자선정, 구비서류,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 (10:00~14:00)가 가능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신청하실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분양문의

대표번호	055-744-3330
홈페이지	www.힐스테이트펑거.kr